

仲裁研究, 第18卷 第2號
2008년 8월 1일 발행, pp.55-77

논문접수일 2008. 7. 2
제재확정일 2008. 7. 24

남북 상사중재기구의 운영과 실행과제

Administration and Practical Problems of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Organization

김상호*
Sang-Ho Kim

〈목 차〉

- I. 서 론
- II. 남북 합의서에 규정된 중재기구의 조직과 운영
- III. 중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IV. 결 어

주제어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상사분쟁, 남북 중재규정, 제3국 중재, 중재관련 협약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8년 ‘7.7 선언’ 이후이며 이어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남북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왔는데 이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한 간에 제도적인 분쟁해결장치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교역과 투자에 임하는 남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1992년 9월 17일자로 당시 남한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정무원총리 간에 합의된 부속합의서¹⁾ 제1장(경제교류·협력) 제1조 제12항에서는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속합의서 체결 다음 달인 10월 북한은 외국인 투자를 총괄하는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1년 후(1993)에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을, 그리고 2년 후(1994)에는 1984년에 제정된 기존의 합영법을 개정하였으며 3년 후(1995년)에는 대외무역관련 상사계약의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는 대외경제계약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분쟁해결수단으로 소송과 중재 중 어느 하나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제3국 중재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 전 해인 1999년에 제정된 대외경제중재법은 북한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외자유치관련 법규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대외경제분쟁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동 중재법의 내용을 현대적 중재제도에 부합시키려고 노력한 일면이 보인다고 하겠다.

경제적 측면에서 6.15공동선언의 가시적 성과로는 남북경협 4대 합의서이다. 4대 합의서란,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분쟁해결합의서’라 함)를 포함하여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이하 ‘투자보장합의서’라 함),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를 말한다.

현재 남북한 간에는 분쟁해결합의서를 포함하여 이들 4대 경협합의서가 2003년 8월 20일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교역과 투자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남북한이 직접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분쟁해결합의서의 후속합의로 남과 북은 2003년

1) 정식명칭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다.

10월 12일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중재위원회합의서’라고 함)를 체결하였는데 이 합의서도 2006년 8월 1일자로 남북한 간에 발효중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 당국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을 합의한 상사중재기구, 즉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관하여 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원회합의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남북 상사중재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실행적 과제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남북 상사분쟁해결 및 중재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다음의 논문들이 있다.

최장호(2004)²⁾는 분쟁해결합의서와 관련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인 선정절차 및 선정상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있다. 장승화(2005)³⁾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업무를 개시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정해야 할 중재규정을 중재의 신청단계에서부터 중재판정에 이르기까지 고찰하는 한편 실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규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최석범 외 4인(2007)⁴⁾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관련 남북합의서상의 주요내용을 고찰하고 중재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주원(2008)⁵⁾은 남북한간의 중재인 선정방법을 비교하는 한편 분쟁해결합의서상의 중재인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북상사중재와 관련된 연구로 김연호(2004)⁶⁾는 남북중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고, 강병근(2004)⁷⁾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활성화를 다루고 있다.

이상 살펴본 논문들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에 합의된 분쟁해결합의서를 중심으로 앞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중재규정의 내용과 규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개선 내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부분적으로 직간접 인용하거나 참조하되 이들 논문에서 다루지 않거나 부각되지 아니한 부분, 즉 중재위원회의 재정운영, 중재위원회와 중재사무처리기관간의 관

2) 최장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 제정에 관한 소고”, 「한국중재학회 발표논문집」, 한국중재학회, 2004.9.4, pp.99-115.

3) 장승희,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의 과제”, 「국중재학회 발표논문집」, 한국중재학회, 2005.8.23, pp.33-54.

4) 최석범 외 4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재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7.3, pp.157-181.

5) 이주원, “남북상사중재에 있어 중재인 선정방식에 관한 연구”, 「재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8.3, pp.147-165.

6) 김연호, “남북중재규정제정의 기본방향”, 「국중재학회 발표논문집」, 한국중재학회, 2004.9.4, pp.7-22.

7) 강병근,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 방안”, 「23차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법무부, 2004.6.28.

계설정 문제, 중재지 및 남북 중재사건의 제3국 중재진행 문제들을 부각시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II. 남북 합의서에 규정된 중재기구의 조직과 운영

1.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 구성

남북 합의서에서는 중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⁸⁾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이나 위원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나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지명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기능⁹⁾

남북한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상설중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중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첫째, 교역 및 경협분쟁의 중재, 조정 및 관련 업무이다.

이는 남북간 교역 및 경협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 업무이다. 분쟁의 당사자는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이다. 아직 시행세칙 등이 제정되지 않아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분쟁당사자로 ‘당국’을 명시한 것은 국영무역이 중심인 북한의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투자분쟁의 중재, 조정 및 관련 업무이다.

이는 투자보장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이다. 이는 동 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남북한 일방의 투자자와 타방(당국)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의 당사자는 먼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되 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면 중재의 방식으로 분쟁을 최종 해결하기 위해 중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자보장합의서는 ‘투자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투자자’란 남북한 어느 일방의 지

8) 분쟁해결합의서 제2조 및 중재위원회합의서 제2조.

9) 분쟁해결합의서 제3조 및 중재위원회합의서 제3조.

역에 투자하는 상대방의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① 일방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회사, 협회, 단체 같은 법인과 ② 일방에 적을 두고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¹⁰⁾

투자보장합의서는 ‘투자자산’을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주요 투자자산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즉, ① 동산,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 ② 재투자된 수익금, 대부금을 비롯한 화폐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청구권 ③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 ④ 지분,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과 같은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권리 ⑤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비롯하여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⑥ 이 밖에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자산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상 변화는 투자를 받아들인 일방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투자자산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¹⁾ 또한 투자보장합의서에서 ‘수익금’이란 이윤, 이자, 재산양도소득, 배당금, 저작권 또는 기술사용료, 수수료 등과 같이 투자의 결과로 생기는 금액을 의미한다.¹²⁾

셋째, 중재관련규정 제정 등의 업무이다.

상설중재기관은 스스로의 중재규칙을 가지고 있다. 분쟁해결합의서에서 중재위원회가 상설중재기관으로서 그 자신의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남북간의 모든 상사분쟁이 상설중재기관에 의한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로서 해결될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¹³⁾

넷째, 중재인 선정업무이다.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의 선정을 위하여 중재위원회에서 남북 쌍방은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상호 교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의 중재인 가운데서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중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도 필요에 따라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¹⁴⁾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는 경우와 당사자에 의해 중재인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재위원회가 개입하여 해당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⁵⁾

10) 투자보장합의서 제1조 제2항.

11) 투자보장합의서 제1조 제1항.

12) 투자보장합의서 제1조 제3항.

13) 따라서 앞으로 남북간 상사분쟁은 중재위원회에서 제정한 중재규칙에 따라 모든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배제한 임시 내지 특별중재(ad hoc arbitration)는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14) 분쟁해결합의서 제5조.

15) 분쟁해결합의서 제10조 제3항.

따라서 분쟁해결합의서에서는 남북 양측의 기존 중재기관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중재인 명부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900여명에 달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인인 명부에 등재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비하면 남북 중재위원회가 유지·관리하는 중재인 명부상의 중재인 수는 극소수에 속한다.

추측컨대 분쟁유형에 따른 전문가를 소수정예로 유지하는 대신 집중심리제도를 도입하여 중재판정업무에 전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해당사건의 중재를 위하여 중재인을 선정할 때 남북 양측 기존 중재기관의 중재인 명부에서 능력과 자격이 있는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중재위원회와 남북 기존 중재기관 간에 협력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중재위원회의 성격

(1) 분쟁해결기관

중재위원회는 상사분쟁해결합의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독자적인 법인능력을 갖는 상사분쟁 해결기구이며 각자 남과 북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의 능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⁶⁾

중재위원회와 그 재산은 분쟁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당국인 경우 그에 대한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범위 내에서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재위원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¹⁷⁾

남과 북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공동대표하며, 남과 북은 중재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분쟁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위원장, 위원 및 양측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하고 상대방 위원장에게 통지한 사건해결 관계자에 대하여 신변의 안전과 출입 및 통신을 포함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조건을 보장하며, 이들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는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제기된 소송으로부터 면제되도록 하였다.¹⁸⁾ 중재위원회가 상사분쟁해결기구로서 갖는 주요 업무는 분쟁해결의 최종수단인 중재관련 업무로서 중재의 개시, 진행 및 종료절차를 공정·신속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중재위원회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중재인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과 북에서 선정된 중재인들을 확정하고 등록한다. 이를 위해 남북의 각 중재위원회는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

16) 중재위원회합의서 제1조 제1항 및 제2항.

17) 중재위원회합의서 제9조 제3항.

18) 중재위원회합의서 제2조 제3항, 제9조 제2항 및 제4항.

여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상호 교환한다. 그리고 각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 중재인 중에 변동이 있으면 이를 상대방 중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중재인은 법률과 국제무역 투자실무에 정통한 자이어야 한다.¹⁹⁾

또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 권한의 존재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판정의 취소에 대한 결정을 비롯하여 사건수속 및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에 관하여 신속히 협의하여 결정한다.²⁰⁾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되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

(2) 정책수립기관

중재위원회는 남북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부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중재위원회는 상사분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는 점에서 남북간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²²⁾

그렇다면 정책수립의 내용이 되는 업무영역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상사중재의 국제적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제7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가는 중재활동에서 국제조약과 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시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UN회원국으로서 북한이 뉴욕협약이나 위싱턴협약에 가입하는 문제, 남북 중재위원회와 남북한의 상설중재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중재협정의 체결문제 등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정책적 문제들을 상호 협의하고 실무에 도입하는 문제들을 정책수립의 현안과제로 협의해야 할 것이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단기적으로는 남북 당사자간의 교역 및 투자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기관으로 발전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의 중재중심센터로 발전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운영해야하며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미, 북일 간의 수교에도 대비하여 국제적 상사분쟁해결 기구로 성장해야 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대비하는 분쟁해결기구로서도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정책을 세우고 육성·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19) 분쟁해결합의서 제5조-제6조 및 중재위원회합의서 제7조.

20) 분쟁해결합의서 제3조 및 제5조, 중재위원회합의서 제3조.

21) 분쟁해결합의서 제16조 제3항.

22) 분쟁해결합의서 제3조 제6항 및 중재위원회합의서 제3조 제4항.

3. 중재위원회의 운영방향

남한의 경우 정부(통일부)는 2007년 4월 16일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을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남측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²³⁾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측의 사정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남과 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중재규정을 공동 제정하고 중재인명부를 교환하여 공식 업무를 개시해야 할 것이다.

중재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된다는 것은 남북간의 교역과 투자 등 상사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제도적인 틀 속에서 해결됨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일회성, 이벤트성 교류 관계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로 남북관계가 질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재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은 그 자체로 남북간 교류에 해당될 뿐 아니라 남북간 법률적, 사회문화적 차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등장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재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나 여타의 남북 대화기관과 달리 남북 경제협력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기관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체의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고 공정한 중재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²⁴⁾

이러한 노력은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재위원의 전문적 의견과 안목에 따른 노력과 부합되어 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이다. 중재위원장과 위원은 부여된 임기 4년 동안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음이 없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국내외적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학계, 법조계, 실업계 등 사계의 인사를 중에서 적격자를 발탁하여 임명하되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분쟁해결합의서 및 중재위원회합의서로서 이들 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이설이 있지만) 국제간의 ‘조약’에 해당된다는 점, 단심제인 중재제도에서 중재위원회가 지정한 중재사무처리기관에서 내린 중재판정의 효력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 중재인 기피관련 업무와 중재판정취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상사분쟁해결기구”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23) 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은 2007년 5월 2일자로 남북상사분쟁 중재사무를 전담하는 내부조직으로 남북상사중재실을 설치하였다.

24) 강병근,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 방안”, 법무부 주최 자료집(제23차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2004. 6. 28), p.121.

은 사법부의 고등법원장에 준하는 예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위원장은 상근직으로 하여 중재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은 과도 기적으로 초기단계에는 비상근으로 하고 각자 자신의 본업에 종사하면서 중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위원회합의서에서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보좌인원 포함)은 중재위원회로부터 보수를 따로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명예직으로 볼 수 있다.²⁵⁾ 따라서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의 장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위원 4인은 학계, 법조계, 실업계 등 사계의 인사로 적격자를 발탁하여 임명하되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 중 1인은 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관청의 현직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위원과 달리 중재인명부를 구성하는 중재인단은 개별적 중재사건의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이므로 보다 실무적인 전문성을 구비한 자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무역과 투자실무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중재실무와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춘 자로 중재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중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중재위원회의 재정운영

중재위원회합의서는 위원회의 재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남과 북에 각각 둔다. 위원회의 비용중 공동비용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기 부담한다. 기금은 남과 북의 위원회 운영, 중재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에 쓴다. 위원장, 위원 및 그 보좌인원은 위원회로부터 보수를 따로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⁶⁾

따라서 중재위원회가 국제적 성격을 가진 명실상부한 중재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5) 중재위원회합의서 제11조 제4항.

26) 중재위원회합의서 제11조. 한편, 동 합의서 제2조 제7항과 제8항에서는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보좌인원을 둘 수 있다.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회의 서기 1명을 각기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을 제11조의 위원회 재정과 관련시켜 볼 때 보좌인원은 보수를 받지 않지만 “서기”는 유급의 상근직원으로 볼 수 있다. 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원회합의서상의 분쟁해결메커니즘으로 볼 때 서기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중재위원회와 중재사무처리기관 간은 물론이고 남북 중재위원회 상호간의 업무협조에 관련된 재발 실무적인 업무를 서기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첫째, 기금이 확보되어 운영되기 전까지는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자는 안이 제시되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부정적이다. 기금의 사용 용도가 “남북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문화·학술·체육 분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 남북 상사중재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은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²⁷⁾

둘째, 재정은 (남측)중재위원회와 (남측)분쟁사무처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분쟁사무처리기관의 경우를 보면 남북간의 교역 및 투자분쟁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며 중재절차 진행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시설을 뒷받침해야 한다.

상사분쟁해결합의서에서는 중재 전 단계에서의 분쟁해결 노력인 “협의에 의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직구성 및 예산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협의”的 의미로는 분쟁해결을 위한 당사자간의 직접 접촉이 되겠지만 분쟁사무처리기관의 개입 및 알선을 통한 당사자간 협의촉진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자의 방식은 대한상사중재원의 클레임 알선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개성공단의 한국기업 입주가 늘어나는데 비례하여 분쟁사건의 예방차원에서의 상담(계약서 작성, 대금결제, 기타 관련 법제 문의 등)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조직대비 및 예산반영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중재인에게 지급하는 수당(보수)이 당사자가 남부한 중재비용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일정수준에서 중재인수당도 일부 보조하는 예산상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분쟁사건의 직접적인 처리는 자기측 분쟁처리기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겠지만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업무, 중재인 및 중재판정부의 권한의 존재나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관련된 업무, 중재인명부의 확정·등록업무, 업무수행을 위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에 관련된 업무, 남북간 상사분쟁의 공정·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반 대책수립 업무,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중재규정의 제정

분쟁해결합의서에서는 중재위원회의 중재규정과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보충에 관하

27)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참조.

여 규정하고 있다.²⁸⁾ 따라서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진행하는데 적용되는 준거규칙인 중재규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이를 시행해야 한다.

중재규정은 개성공단을 포함하여 남북간의 교역과 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절차에 제도적으로 적용되는 준거규칙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중재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중재규정의 제정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중재실무상의 주요문제로서 중재위원회와 중재사무처리기관간의 관계설정 문제, 중재지 및 제3국 중재 문제, 북한의 중재관련 국제협약 가입 문제 등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제정방향

기본적으로 남북 중재규정은 아래의 기준이 충족되어 제정되어야 한다.

첫째, 관련 남북 합의서와의 부합성이다.

본 규정은 남북간의 상위법 규범인 분쟁해결합의서 및 투자보장합의서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본 규정은 2003년 10월 12일에 서명되어 2005년 8월 1일자로 발효 중인 중재위원회합의서와도 부합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성과 보편성의 반영이다.

본 규정은 남북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주된 목적으로 하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외국인 및 외국기업도 본 규정을 이용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상의 투자자에는 남한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투자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이 중재신청하는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규정은 국제성과 보편성을 가진 중재규정이 되어야 하며 외국의 주요 중재법이나 중재기구의 중재규칙과도 부합되어야 한다.

셋째, 구체성과 명확성이다.

현재 남북 간에는 본 규정 외에 별도의 시행세칙의 제정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규정이 실질적으로 중재법과 중재규칙 양자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규정은 중재절차 진행에 관한 모든 경우를 예상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분쟁해결합의서나 중재위원회합의서는 조약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추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법제도 및 언어의 상이, 예상되는 정치적 긴장 등을 고려할 때 본 중재규정은 절차의 자연 등에 대비하여 그 내용이

28) 분쟁해결합의서 제3조 제3항.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또한 중재절차 진행에서 해석상의 의문이나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사용하는 ‘용어’의 명확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남북의 특수성 반영이다.

본 중재규정은 남북 당국이 지난 반세기 간의 반목과 대립을 청산하고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상사중재기구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창설하여 이를 운영하는 규정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남북한 간에 공동의 재판기관이 없고 법체계가 상이한 상황에서 준사법적 기능(중재판정 취소 등)은 물론 준입법적 기능(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사유를 정하는 경우 등)도 행사한다. 따라서 본 규정에는 상사중재의 국제적 보편성은 물론 이러한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도 반영되어야 한다.

(2) 중재위원회와 중재사무처리기관의 관계성

1) 남측 중재사무처리기관 지정

중재위원회의 제10조(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능) 제1항²⁹⁾에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사무처리기관을 남북이 각각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중재위원회가 비상설기구이며 현실적으로 분쟁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재위원회의 사무를 남북 각각의 상설중재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된다.

남북상사중재규정에 중재사무처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남측 기관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남측 중재법상의 유일한 상설중재기관으로서 지난 40여년 동안 중재경험에 관한 노우하우는 물론 물적 및 인적 시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대한상사중재원은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심판소,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산하의 지역중재센터와 같은 국제중재기구와는 물론 AAA(미국중재협회)를 비롯하여 주요 국제적 중재기관과의 중재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중재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왔다. 북한의 경우는 대외경제중재법상의 법정 상설중재기관인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정에 따른 문제점

중재사무처리기관 지정 이후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중재위원회와 중재사무처리기관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다.

실무상으로 볼 때 중재신청서 등 제반서류의 물리적 접수기관으로 중재사무처리기관(남측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중재신청서 등의 서류에 기재

29) 중재위원회의 제10조(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능) 1. : 남파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자기측 중재사무처리 기관을 각각 지정한다.

하는 수신기관(접수대상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이다. 중재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할지라도 중재절차가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수신기관이 서류 접수 후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심사하여 흄결이 없어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형식적 요건구비 여부의 심사, 즉 형식적 심사는 중재실무에서 볼 때 등기우편 등 우편 접수로도 행해질 수 있겠으나 주로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접수현장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수신기관’(접수대상기관) 결정과 관련하여 2가지 상이한 견해가 있다.

하나의 입장은, 수신기관은 어디까지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분쟁해결합의서 제9조 제1항³⁰⁾의 규정에 따라 중재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은 신청인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갖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접수자임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되어야 상위법인 분쟁해결합의서 및 중재위원회합의서의 내용과도 배치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대의 의견은 수신기관이 중재사무처리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비상임이고 중재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직접 접수하지도 않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재위원회가 중재사무처리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접수기관 및 접수 서류의 형식적 심사기관의 양자를 모두 위탁하는 것이 실무에 맞고 행정상의 편의에도 부합한다고 한다.

필자는 후자의 입장에 찬성하고자 한다. 즉, 지정된 ‘중재사무처리기관’은 중재신청서 등 서류의 물리적 접수기관은 물론이고 중재신청서 등 제반 서류에 수신기관(접수대상기관)으로 기재되어도(이는 수신기관 겸 서류의 형식적 심사기관이 된다는 의미임) 무방할 것이란 입장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무역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 제41조³¹⁾에서는 주무 행정관청인 산업자원부장관³²⁾으로 하여금 무역거래자간에 발생한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2조에서는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³³⁾

30) 분쟁해결합의서 제9조(중재신청) 1. :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중재사건이 접수된 날로 한다.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자기측 기관을 지정한다.

31) 대외무역법 제41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 ① 무역거래자는 그 상호간이나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와 물품 등의 수출·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무역거래자에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그 분쟁에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분쟁에 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무역분쟁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32) 2008년 2월 새 정부의 출범 및 정부 직제개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바뀌었지만 본문에서는 전자의 명칭을 그대로 쓰기로 한다.

이들 대외무역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인 대외무역법시행령에서 좀더 구체화되고 있다. 즉, 시행령 제98조³⁴⁾에서는 분쟁의 당사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04조³⁵⁾에서는 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간에 무역거래 또는 선적전검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이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신청하면 산업자원부장관 부령인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조정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조정사건의 접수기관 겸 제출 서류의 형식적 심사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³⁶⁾ 조정신청에 따른 조정, 조정 피신청인의 답변, 반대신청, 조정비용 등 모든 절차진행이 중재원 주도하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당사자간에 조정이 실패하면 분쟁의 당사자는 최종해결을 위해 중재합의를 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이때의 중재합의는 당사자가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방식, 즉 장래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합의가 아니고 현재 발생한 분쟁(현존분쟁)의 해결을 위해 사후에 하는 중재합의이다.³⁷⁾

따라서 대외무역법, 동법 시행령 및 무역관리규정의 흐름을 무역분쟁 처리와 관련시켜 검토해 볼 때 대외무역법에서는 분쟁처리의 주체가 산업자원부장관이지만 동법 시행령 및 무역관리규정에서는 장관의 업무위탁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장이 무역분쟁 관련서류의 접수기관일 뿐 아니라 제출된 서류의 형식적 심사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외무역법상의 분쟁처리 메커니즘(특히 접수기관 및 수신기관의 측면에서)을 남북중재규정에 준용하더라도 흥결이 없다고 생각된다.

33) 대외무역법 제42조(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 등)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하여 수출자와 선적 전 검사기관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분쟁에 관한 중재를 담당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적인 중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34)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8조(분쟁조정신청) : ① 무역거래 또는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법 제41조제4항 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5)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04조(선적전검사중재기관) : ①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기관은 중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에 대하여는 중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6)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2-4(조정신청의 접수 및 통지) : ①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조정비용의 예납과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 5부를 중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재원장은 조정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접수된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중재실무에서는 이 사후 중재합의를 ‘중재부탁계약’(submission to arbitration)이라고 한다. 대외무역법(제41조 제4항)상 산업자원부장관이 분쟁당사자에게 사후 중재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업무도 모두 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되어 중재원장이 사후 중재합의를 알선하는 주체로서 기능한다. 이를 위해 중재원은 중재원 명의로 사후 중재합의를 위한 소정양식을 마련하여 놓고 당사자를 상대로 중재합의 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중재지의 결정

중재지는 중재심리를 개최하는 물리적 장소라는 의미 외에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지법이 중재규정을 보충하는 절차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중재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제출, 심리에의 출석, 비용 등의 측면에서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데 서로 선호하는 중재지를 고집하다 보면 본계약 자체의 체결이 지연되는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 AAA(미국중재협회), JCAA(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 등 각국의 상설중재기관은 당사자간의 중재지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중재협정을 통해 그 완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재지에서의 중재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중재지 결정방식을 보면 피신청인 소재국가의 중재기관에서 진행되는 방식, 신청인국가에서 진행되는 방식, 아니면 제3국을 중재지로 하여 진행되는 방식 등이 있다. 연혁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시장경제권의 국가와 공산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거래, 소위 동서무역(East-West Trade)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지로는 “피신청인이 소재하는 국가”를 중재지로 하는 경우가 많다.³⁸⁾

이는 전통적으로 국영무역 위주의 공산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상거래에서는 경제체제가 다르고 상거래에 관한 관습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재지’에 관한 협상이 쉽지 않아 도입된 방식이다.

앞으로 남북한간의 중재사건에서 대형 분쟁사건의 경우에는 중재지 결정이 당사자 합의로 결정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중재규정의 제정목적이 남북한 간의 이질적 체제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가능한 모든 사태의 발생을 예측하여 규정상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특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중재지 결정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채택할 필요성도 있다.

중재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소속국가를 중재지로 하는 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면 당사자 자치를 해손한다는 것과 피신청인주의가 중재관행 또는 무역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주요 명분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당사자합의로 중재지를 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피신청인주의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한다고 하면 이는 당사자 자치를 해손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당사자합의가 없는 경우에 피신청인의 수도(서울 또는 평양)를 중재지로 하는 방안과 개성을 중재지로 하는 방안을 남북상사중재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재실무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8) 1950-1960년대 JCAA(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가 동구파의 공산사회주의국가와 체결한 중재협정은 모두 ‘피신청인 소재국가’를 중재지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북방정책의 추진으로 1990년대에 공산사회주의권 국가(러시아, 중국, 평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와 체결한 중재협정은 모두 중재지 결정에 관한 중재협정으로 피신청인 소재국가를 중재지로 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은 현재 남북간 최대의 경협사업이고 본공단 개발이 완료되면 남측 기업의 대대적 진출이 예상되는 곳으로 현재 남측의 정부 및 민간차원의 유관기관이 업무를 보고 있다. 따라서 중재자를 개성으로 하고 실무상 중재절차 진행은 남북의 중재위원회가 합의하여 공동중재사무국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진행하면 될 것이다. 앞으로 남북상사중재규정이 남북 쌍방간에 교환되면 (가칭) 남북공동중재사무소의 설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3. 남북 중재사건과 제3국 중재

북한은 분쟁발생시 북한의 중재기관에서 분쟁이 해결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한-싱가포르 FTA 체결 등으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가 확대됨에 따라 중재자를 제3국으로 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의 개발이 예정대로 진척이 되고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북한에서의 중재를 기피하는 경우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외국계 회사들의 본격적인 제품생산 및 생산된 제품의 외국수출과 판로확대를 위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대비하여 제3국 중재에 대처하는 중재협정체결을 남북한 중재기관은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제한적으로 제3국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에서는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합영법과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도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를 규정하고 있다.³⁹⁾ 합작법에서는 제3국 중재에 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분쟁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실패하면 북한의 중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기업법에도 제3국 중재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외국인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외국인 단독출자이므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와 북한내 해당기업 내지는 북한 당국과의 분쟁이기 때문에 제3국 중재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1995년 2월에 제정·공포된 대외경제계약법은 중국의 섭외경제계약법을 모범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⁴⁰⁾ 이 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투자관련 법령 및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대외경제계약이 규율되어 계약체결의 방식이나 효력, 계약불이행시의 손해배상, 계약강제이행수단, 분쟁해결절차 및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 법의 제정·공포로 인해 대부분의 법적 문제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게 되었다. 대외경제계약법에서는 북한의 재판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을 규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협의, 북한의

39)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이라는 표현이나 “제3국의 중재기관”이라는 표현은 의미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40) 법원행정처, 「한의 중재제도」, 1995, p.135.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만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중재기관 간에 체결된 중재협정은 앞으로 개성공단 분쟁의 제3국 중재에 대비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중재협회와 소련연방상공회의소는 1977년 미국과 소련간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 무역계약에 사용할 선택적 중재조항」(Optional Arbitration Clause for Use in Contracts in USA-USSR Trade)에 관한 중재협정을 체결하였다.⁴¹⁾

이 중재협정은 그 제목이 나타내듯이 그 채택 여부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특수사정에 적합한 다른 방식의 중재도 물론 가능하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서는 소련연방상공회의소 부설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는 물론이고 미국중재협회의 규칙에 의거한 중재나, 아니면 피신청인 국가에서의 중재도 가능하다.

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중재절차는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서 행해지며, ②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하며, ③ 중재자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이며, ④ 스톡홀름 상업회의소가 중재인 선정권자가 되며, ⑤ 공용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단일 언어에 합의하지 못하면 진술, 구두심문 및 중재판정은 영어와 러시아어로 하되 기타 증거서류들은 중재판정부가 요구하지 않는 한 번역이 필요 없도록 하였다.

앞으로 남북 중재사건의 제3국 중재를 고려함에 있어 남북한이 모두 UN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UN차원에서 제정한 UNCITRAL 중재규칙의 적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자는 북경으로 하고 중재인선정기관 및 중재기관으로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로 하거나 개성공단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중국 청도에서 청도중재위원회(Qingdao Arbitration Commission)에 의한 중재진행에 합의 할 수도 있을 것이다.⁴²⁾

4. 북한의 중재관련 국제협약 가입

남북 교역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상사분쟁과 투자에 따른 투자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국제협약으로는 뉴욕협약과 위싱턴협약이 있으나 현재 북한은 두 협약에 모두 미가입국이다.

41) ICCA, "Commercial Arbitration", Year Book Vol.VIII(1983), Deventer :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pp.299-303.

42) 협정체결의 당사자는 3국의 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혹은 청도중재위원회)이 관여하는 3자간 중재협정(tripartite arbitration agreement)의 형식이 될 것이다. 이 3자간 중재협정의 모범으로는 1989년 미국중재협회, 체코상공회의소 및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 간에 체결된 'USA-Czechoslovakia-Austria Tripartite Agreement'를 들 수 있다(ICCA Year Book Vol.XV, 1990, pp.186-192 참조).

우리나라는 1973년 뉴욕협약에 가입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 이 협약 가입국간 그 승인과 집행을 보장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뉴욕협약 가입시 동 협약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 외국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의 가입국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며 ②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기로 유보선언을 하였다.⁴³⁾

남북한 경제교류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뉴욕협약 가입현황을 보면 러시아는 1960년에, 중국은 1987년에, 일본은 1961년에, 그리고 미국은 1970년에 각각 뉴욕협약에 가입하였다.⁴⁴⁾

한편, 워싱턴협약에서는 국제간 투자분쟁에 관한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기 위한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구가 ‘투자분쟁국제해결본부’(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ICSID)이다.

무역 등 국제상거래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중재는 분쟁해결에 있어 통상적으로 특정 국가의 법을 준거하고 그 관할을 인정함으로써 국가가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정성·독립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혀 독립된 별개의 중재에 관한 준거법을 제정한 것이 워싱턴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워싱턴협약에 1966년 4월 18일에 서명한 후 1967년 2월 21일 비준서를 기탁하여 동년 3월 23일에 발효하였다. 대북 무역과 투자, 특히 개성공단 진출에 관심을 가진 외국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중재판정의 국제적 승인과 집행을 담보하는 뉴욕협약과 워싱턴협약에 가입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는 대북 경제교류 증대 및 그에 따른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확고한 제도적 장치이며 북한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⁴⁵⁾

IV. 결 어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남북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왔는데 이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는 남북한 간에 제도적인 분쟁해결장치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교역과 투

43) 첫 번째 유보선언을 ‘상호주의 유보선언’이라고 하며 두 번째 유보선언을 ‘상사한정 유보선언’이라고 한다.

44) 러시아(소련 붕괴 후 러시아로 승계)와 일본은 상호주의 유보선언을, 중국과 미국은 상호주의 및 상사한정 유보선언을 하였다.

45) 분쟁해결합의서는 제36조에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중재판정 불이행시 관할 재판기관에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해당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여부를 중재위원회가 판단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자의적 판단이 개재될 여지가 있으므로 뉴욕협약과 워싱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를 준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에 종사하는 남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간에 분쟁해결을 위한 상사중재제도의 기반구축 측면에서 남북한 당국이 이룩한 가시적 성과로는 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원회합의서의 체결이다. 분쟁해결합의서는 2003년 8월 20일에 발효되었고 2005년 8월 1일자로 중재위원회합의서 까지 발효되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포함하여 남북한 간의 교역과 투자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남북한이 직접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합의서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기구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북한측의 사정으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다.

이 논문에서는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남북한 상사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실행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는 일이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상사분쟁해결기구로서, 또한 상사분쟁 해결의 정책수립기관으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남북 당국은 제도적인 상사분쟁해결 제도의 기반 구축이야 말로 상거래의 속성상 남북한 경제교류와 대북 투자를 획기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중재위원회를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중재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은 개성공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둘째, 남북 중재규정 제정에는 국제성과 남북한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남북 중재규정은 상위 법규범인 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원회합의서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제성과 보편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한은 이질적 법적 환경과 경제체제 및 상관행에 따라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중재규정의 내용은 중재절차의 모든 단계와 사태를 구체적으로 예상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남북간 언어상의 상위점도 있기 때문에 용어의 명확성도 요구된다.

셋째, 북한도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남한에서는 2007년 4월 17일 대한상사중재원이 남측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북한으로서는 대외경제중재법상의 상설중재기관인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중재지 결정에 있어 당사자 합의를 존중하되 합의가 없거나 실패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 소재국을 중재지로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중재지를 피신청인이 소재하는 국가로 결정하는 방식, 즉 피신청인주의는 전통적으로 자본주의·시장경제권의 국가와 공산사회주의권 국가 간의 동서무역에서 발생하는 중재사건의 중재지 결정에 이용되어 왔다. 남북 중재사건에서 경제체제가 다르고 상관습이 상이한 상황하에서 중재지가 당사자 합의로 결정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사자 합의가 실패하는 경우에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방식도 분쟁금액이 크거나 남북관계가 긴장 국면에 처해있을 경우에는 판정부에 의한 중재지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남북 중재사건의 제3국에서의 중재진행에도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개성공단의 개발이 예정대로 진척이 되고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북한에서의 중재를 기피하는 현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중재관련 국제협약에의 조속한 가입이 요청된다.

남한기업은 물론이고 대북 무역과 투자에 관심을 가진 외국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북 경제교류의 촉진을 위해서, 또한 북한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북한의 뉴욕 협약과 워싱턴협약에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선결과제이다.

참 고 문 헌

강병근,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 방안”, 「23차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법무부, 2004. 6. 28.

김연호, “남북중재규정 제정의 기본방향”, 「국중재학회 발표논문집」, 한국중재학회, 2004. 9. 4.

이주원, “남북상사중재에 있어 중재인 선정방식에 관한 연구”, 「재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8.3.

장승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의 과제”, 「국중재학회 발표논문집」, 한국중재학회, 2005. 8. 23.

최석범 외 4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재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7.3.

최장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 제정에 관한 소고”, 「국중재학회 발표논문집」, 한국중재학회, 2004. 9. 4.

법원행정처, 「한의 중재제도」, 1995.

ICCA, “Commercial Arbitration”, Year Book Vol.VIII(1983), Deventer :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_____, Year Book Vol.XV(1990).

〈중재관련 합의서 및 협정자료〉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2000)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00)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12.13)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9.17)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 9.17))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9.17)
-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위싱턴협약)
- 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뉴욕협약)
- Optional Arbitration Clause for Use in Contracts in USA-USSR Trade-1977(prepared by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nd USSR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Agreement between the Hun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regarding the Arbitration clause to be inserted in Trade contracts between Hungary and Japan(1961. 11.13)
- Agreement between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and the Chamber of Commerce of the Rumanian People’s Republic regarding the Arbitration Clause to be inserted in Trade Contracts between Japanese Physical and Legal Persons and State Enterprises for Foreign Trade of the Rumanian People’s Republic(1957.5.22)
- Agreement between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and the Chamber of Commerce of Czechoslovakia regarding the Arbitration Clause to be inserted in Trade Contracts between Japan and Czechoslovakia(1957.3.11)
- Agreement between the Bul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regarding the Arbitration Clause to be inserted in Trade Contracts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Bulgaria and Japan (1961.7.6.)
- Agreement between the Polish Chamber of Foreign Trade and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regarding the Arbitration Clause to be inserted in Trade Contracts between Poland and Japan(1957.5.8.)

ABSTRACT

Administration and Practical Problems of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Organization

Sang-Ho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research on the administration and practical problems of the arbitral organization called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The Arbitration Commission shall be set up under the South-North Agreements officially called 「Agreement on Settlement Procedure of Commercial Dispute」 and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South-North Arbitration Commiss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A variety means of dispute settlement including friendly consultations,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all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will be used frequently and institutionally to settle commercial disputes and conflicts arising from economic transac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Under the circumstances, it is becoming a problem of vital importance how to operate the Arbitration Commission for the prompt and effective settlement of the South-North commercial disputes.

First of all,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should recognize the availability of prompt and effec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such as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to be made by the Arbitration Commission would promote the orderly growth and encouragement of the South-North trade and investment, for which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taken as soon as possible :

1. Enactment of the South-North Arbitration Rules.
2. Designation of the arbitral institution by North-Korean side. In this connectio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was already designated officially as the arbitral organization of South Korean side as of April 17, 2007.
3. Arbitration shall be held in the place where the respondent has his domicile, in case that both parties fail to agree as to the place of arbitration.
4. Permission of a third country arbitration in case that both parties agree to do so.

5. To become a member country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including the New York Convention.

Key Words :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Commercial Dispute, South-North Arbitration Rules, Third Country Arbitration, Conventions on Arbitration